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2. 10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52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. 28. 강남구청장(총무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2. 10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양미영)

- 가. 제안이유
 - 2022. 1. 13.字 시행된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원활한 후생복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소속공무원의 범위 변경하여 후생복지 적용 대상 변경(안 제2조)
 - 후생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조문 신설(안 제12조)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
 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 -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11.5. ~ 2021.11.25.)
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서 제출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본 조례안은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¹⁾ 및 「지방공무원법」²⁾ 이 개정되어 구의회 직원의 소속이 분리되었음.

- 특히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1항 후단³⁾에 따라 후생복지 제도에 대해 현재 분

1) 지방자치법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4조(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) ①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적용한다.

2) 지방공무원법

제6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3)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진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상호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

- 안 제2조(정의) 제1호에서는 강남구 소속공무원에서 구의회를 삭제하는 것은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것임.

- 안 제12조(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) 신설규정은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.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제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리 운영할 준비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통합운영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 28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총무과

1. 제안이유

2022. 1. 13.字 시행된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원활한 후생복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공무원의 범위 변경하여 후생복지 적용 대상 변경(안 제2조)
- 나. 후생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조문 신설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 - 2) 입법예고(2021. 11. 5. ~ 2021. 11. 25.)
 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서 제출 제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구의회·보건소·동주민센터”를 “본청·보건소·동주민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) 구청장은 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한다) <u>본청 · 구의회 · 보건소 · 동주민센터</u>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12조</u>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본청 · 보건소 · 동주민센터</u>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(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)</u> <u>구청장은 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</u>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